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총 계	1,225,660,825	36,769,820
일 반 회 계	1,117,719,106	33,531,573
특 별 회 계	107,941,719	3,238,247
기 타 특 별 회 계	18,706,573	561,194
• 주택사업특별회계	78,993	2,369
• 교통사업특별회계	11,636,230	349,086
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,886,364	206,590
• 자원순환특별회계	86,286	2,588
•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	18,700	561
공 기 업 특 별 회 계	89,235,146	2,677,053
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	23,321,154	699,634
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	60,549,768	1,816,493
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5,364,224	160,926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488,44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5,400,000천원으로 한다.